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의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마목,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함(안 제64조 및 제65조).

II. 검토의견

안 제64조에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규정인 제64조의2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2항1)에 따라 도조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법률에 규정되면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규 도입될 경우, 현재도 숙박시설 과잉공급²⁾인 상황에서 도시 지역의 많은 주택이 신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도 전체 숙박시설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3호라목·마목, 제20조의3 및 제86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제4항·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적정 숙박시설) 4.6만실 대비 (현재 숙박시설) 7.9만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위원 이 화 실)